

4. 기대효과



- 정책수립 및 시행의 정당성 확보
- 상시적인 현안의 논의장 마련을 통한 조속한 대응
- 택시업무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 예산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형평성 시비 해소
- 평가의 실효성 확보
- 근로자 복지의 획기적인 개선
- 상시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한 택시 서비스 제고 가능



부록

1. 센터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등



■ 택시 업무 적정화 특별조치법(1970년 제정, 2014년 개정)

✓ 제1조

→ 이 법률은 지정지역에 있어서 택시 운전자의 등록을 실시하고, 특정지정지역에 있어서 택시업무적정화사업의 실시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정하는 것 등에 의해 택시 사업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운송의 안전 및 이용의 편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5. 이 법률에서 '지정지역'이란 택시에 의한 운송 인수가 오로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도로운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적절한 근무시간 또는 승무시간에 의하지 않는 근무 또는 승무,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운송 인수의 거절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상황에 비추어 택시사업 업무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특정지정지역'이란 지정지역 중, 특히 이용자의 편의 확보라는 점에서 택시사업의 업무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4조

1. 지정지역 내에서 택시 사업에 관련된 다음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지정지역마다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자(이하 '적정화 실시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해당 지정지역 내에 영업소를 갖는 택시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① 택시 운전자의 도로운송법에 위반하는 운송인수의 거절, 기타 동법 또는 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및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도
 - ② 택시 운전자의 업무 취급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수
 - ③ 택시 사업의 이용자로부터의 민원 처리
 - ④ 택시 승차장, 기타 택시사업의 이용자를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전항의 지정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 행한다.

✓ 제35조의 2

1. 국토교통대신은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의 지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명칭, 주소, 지정에 관련된 특정지정지역, 적정화 업무를 실시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적정화 업무의 실시를 개시하는 일을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2. 적정화 실시 기관이 그 명칭, 주소 또는 적정화 업무를 실시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제36조

1.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은 매년 업무연도 개시 전에 적정화 업무에 관련된 사업계획, 수지 예산 및 자금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은 전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정화 업무 이외의 업무에 관련된 사업계획, 수지 예산 및 자금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은 매년 업무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

1.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은 매년 업무연도에 제34조의 1항의 부담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에 대해서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은 전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 해당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의 지정에 관련된 특정지역내에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택시 사업자에 대해서 그 인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택시 사업자는 전항의 통지에 따라 적정화 실시 사업 기관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택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의 금액에 납부기한일 다음 날로부터 해당 부담금의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 일일마다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6.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독촉장에 의해 기한을 지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한은 독촉장을 발신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7.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납부 의무자가 그 지정의 기한까지 그 독촉에 관련된 부담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대신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8.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 대해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에게 부담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납부토록 명할 수 있다.



✓ 제39조

1.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에는 적정화 사업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적정화 사업 자문위원회는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의 대표자의 자문에 응해 부담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기타 적정화 업무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이들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의 대표자에게 진술할 수 있다.
3. 적정화 사업 자문 위원회의 위원은 택시 사업자가 조직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택시 운전자가 조직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택시 사업의 이용자 중,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얻어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한다.

✓ 제48조

1. 국토교통대신은 특정지정지역마다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해당 특정지정지역에 관련된 택시 사업의 업무에 필요한 지리시험을 실시한다.
2. 전항의 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국토교통대신에게 납부해야 한다.



✓ 제49조

1. 국토교통대신은 신청에 의해 적정화사업 실시 기관에게 전조 제1항의 시험의 사무(이하 '시험사무'라 한다.)를 행하게 할 수 있다.
2. 적정화사업 실시 기관이 시험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호 중 '국토교통대신'은 '적정화사업 실시 기관'으로 갈음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정화사업 실시 기관이 시험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수수료는 해당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납부된 수수료는 해당 적정화사업 실시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감사합니다